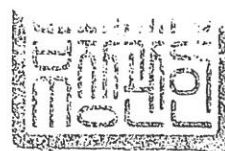


社團法人 新世代 文化藝術交流團

定 款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신세대 문화예술 교류단(이하“법인”이라 함)이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①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에 두고 필요 시에는 지회.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목적) 본법인은 새로운 신세대 문화예술인을 발굴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법인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세대 문화예술 심포지엄.세미나 개최
2. 신세대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조사 연구
3. 신세대 문화예술교류에 관한 무용.국악.밴드마아칭.치어리더.가요합창. 에어로빅.미술.음악.서예.바둑대회등 각종행사 개최
4. 신세대 교류사업
5. 신세대 문화예술에 관련된 자료발간
6. 신세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지원사업
7. 신세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관련 부대 사업일체

제 5 조(수익사업)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이익의 제공)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이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은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 2 장 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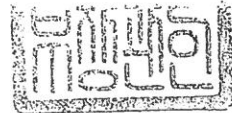
제 7 조(구분 및 입회절차)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의 추천으로 이사장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자로 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10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회원의 상벌)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명, 견책 이외의 징계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이 사 2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 사 2인

제 13 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 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 16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사 4년
2. 감 사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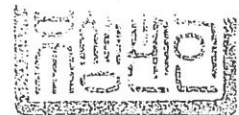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7 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법인을 대표하고 본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 및 궐위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 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 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18 조(고문·자문위원) ①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수 있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이사회와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 4 장 총 칙



제 19 조(구성) 총회는 본 법인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직 정회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2. 제 17조 제 4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② 이사장이 제 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을 하지 않

을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의를 소집 할수 있다.

제 22 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 1 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4 조(총회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법인과 이해가 상반 되는 자에 관한 사항

주생본인

제 5 장 이 사 회

제 25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6 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때
2. 제 17조 제 4항 제 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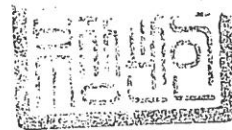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제 1항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8 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 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9 조(이사회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재정(재산과회계)

제 30 조(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 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기본재산의 처분) 본 법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 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 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 33 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 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5 조(차입금)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 조(계속비)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 37 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결산 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 39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40 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이며,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상임이사)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 41 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2 조(분과위원회) 본 법인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3 조(법인 해산)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4 조(정관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5 조(업무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6 조(규칙제정) 본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